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69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7. .

제안자 : 행정기구 직제개편
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('26. 8. 14.)이 예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,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행정건설위원회’를 ‘행정경제위원회’로, ‘복지도시위원회’를 ‘보건복지위원회’로 명칭 변경(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)
- 상임위원회에 ‘도시환경건설위원회’를 신설(안 제2조제4호)
-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현행: 새마포담당관, 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국, 관광경제국, 재정관리국, 교통건설국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
 - 변경: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문화경제국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

-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제3호)
 - 현행: 복지동행국, 교육체육국, 환경녹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
 - 변경: 미래교육국, 복지국, 보건소,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
-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제4호)
 - 신설: 도시환경국, 교통건설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행정경제위원회 - 7명

3. 보건복지위원회 - 6명

4. 도시환경건설위원회 - 5명

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행정건설위원회”를 “행정경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새마포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행정지원국”을 “행정관리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관광경제국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재정관리국”을 “문화경제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복지도시위원회”를 “보건복지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복지동행국”을 “미래교육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교육체육국”을 “복지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시환경건설위원회

가. 도시환경국

나. 교통건설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6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<u>행정건설위원회</u> - 9명 3. <u>복지도시위원회</u> - 9명 〈신 설〉	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행정경제위원회</u> - 7명 3. <u>보건복지위원회</u> - 6명 4. <u>도시환경건설위원회</u> - 5명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<u>행정건설위원회</u> 가. <u>새마포담당관</u> 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 략) 다. <u>행정지원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<u>관광경제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. <u>재정관리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. <u>교통건설국</u> 소관에 속하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행정경제위원회</u> 가. <u>홍보담당관</u> ----- --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행정관리국</u> ----- --- 라. <u>기획재정국</u> ----- --- 마. <u>문화경제국</u> ----- --- 〈삭 제〉

<u>는 사항</u> <u>사.·아.</u> (생 략) 3. <u>복지도시위원회</u> 가. <u>복지동행국</u>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. <u>교육체육국</u>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. <u>환경녹지국</u>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. <u>도시관리국</u>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마. (생 략) 바. (생 략) 〈<u>신 설</u>〉 ③ (생 략)	<u>바.·사.</u> (현행 사목 및 아목 과 같음) 3. <u>보건복지위원회</u> 가. <u>미래교육국</u> ----- --- 나. <u>복지국</u> ----- --- 〈<u>삭 제</u>〉 〈<u>삭 제</u>〉 다. (현행 마목과 같음) 라. (현행 바목과 같음) 4. <u>도시환경건설위원회</u> 가. <u>도시환경국</u> 나. <u>교통건설국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김자영
연 락 처	02-3153-6084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